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72호 2021. 5. 2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7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8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5
- 삼척시 고시 제82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 8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588호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10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1 - 7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18.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284-6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5.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 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330-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284-63	20210518	가설건축물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 (동안)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330-4	계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284-63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330-4	1건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284-63	20210518	가설건축물	20090626	역사인물이 승휴의호(동안)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1 - 8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길 104-58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5.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 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86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길 104-58	20210521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1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86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길 104-58	20210521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고시 제2021 - 82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의거 관내 대상건물에 직권부여한 상세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1.

삼척시장

○ 상세주소 직권부여 : 강원도 삼척시 회강길 609-28 (자원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입력번호	업무구분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24325	상세주소 부여(직권)	강원도 삼척시 회강길 609-28 (자원동)	20210521

삼척시 공고 제2021-588호

「삼척시민상 조례」 외 1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삼척시장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가. 삼척시민상 조례
- 나. 삼척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시민상 수상영예 제고를 위한 엄격한 심사와 기준을 정하고,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후보자 추천 자격제한 기준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 수상제외자 기준 강화 및 신설(안 제5조)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수상후보자 추천 기준 신설(안 제6조제3항)

- 수상후보자 추천 시 동일한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과 읍·면·동장은 2년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다. 최근 2년간 수상자 미선정에 따라 수상자의 결정기준 완화(안 제8조제2항)

- (현행) 출석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
- (변경)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총무과
- 전화 : 033-570-3433
- FAX : 033-570-3133
- E-mail : artemis907@korea.kr

5.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삼척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수상후보자 추천 시 동일한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과 읍·면·동장은 2년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제8조제2항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5분의 4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3.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4.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② (생략)</p>	<p>제5조(수상제외자)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u> 3. <u>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u> 4. <u>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u> 5. <u>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u> 6. <u>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u> 7. <u>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u> <p>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② (현행과 같음)</p>

<신 설>

③ (생략)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생략)

②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하 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제1항의 수상후보자 추천 시 동일한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과 읍·면·동장은 2년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2 이상-----
-- 3분의 2 이상-----

-----.

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단체

-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
-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 다. 그 밖에 개별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

제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5. 수상후보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범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필한 단체·「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단위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단체</u></p> <p>3. (생략)</p>	<p>제2조(범위)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사회단체</u> 가. <u>「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u> 나. <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u> 다. <u>그 밖에 개별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u></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추천구비서류) ① 「삼척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삼척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삭제</u></p> <p><u><신설></u></p> <p>5.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u>제1항제 5호</u>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u>아니한다</u>.</p>	<p>제3조(추천구비서류) ①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5. <u>수상후보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 <u>제1항제 6호</u>----- ----- <u>않는다</u>.</p>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